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2021년 2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월 2일(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2. 2.(화)	담당부서	관세청 통관기획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담당과장	유성우 과장(044-203-5140) 한 민 과장(042-481-7810)	담 당 자	송승희 사무관(044-203-5146) 김인순 사무관(042-481-7841)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하여,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 세관직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인력이 함께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 확인

○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송승희 사무관(☎044-203-51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 개요

□ 전동기 정의

○ **전기 에너지**를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인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기계 장치**, 즉 전기로 동력을 만드는 기계

* 일반적으로 모터라고 하며 전원에 따라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로 구분

□ 수입요건 확인 대상 전동기

○ (**적용대상**)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저압삼상유도전동기**(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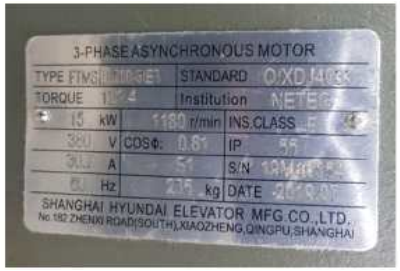
* 600V이하의 일반용 3상농형유도전동기로서 0.75kW이상 375kW이하까지이며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부고시)에 따른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Ⅱ에 해당하는 것

○ (**확인내용**) 세관 및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직원이 수입 전동기의 세관 신고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여부를 실물 확인을 통해 검사

<수입전동기 물품검사시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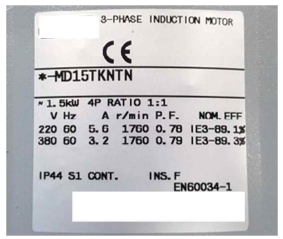
구 분	확인사항	세부내용
수입요건 확인 신청 전동기	수입요건 확인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품목, 모델명, 용량, 수량,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수 여부 확인	효율라벨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효율신고 여부, 명판 기재사항 등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으로 수입 신고한 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 해당여부	품목, 용량(0.75kW미만) 등 삼상유도전동기 비대상 해당여부 등

<전동기 및 명판 사진 예시>

삼상유도전동기	전동기 명판
	

참고2 삼상유도전동기 수입신고 위반사례

□ 협업검사 시범운영 결과 주요적발 내역

위반사례	효율기자재 신고물품	실제 수입신고한 물품
• 효율기자재 신고대상이나 非대상인 것으로 세관신고 - 효율측정 및 결과 신고 및 라벨부착 의무 위반	(신고내역 없음)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으로 세관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 소비효율라벨을 거짓으로 표기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으로는 세관 신고하였으나 소비효율 라벨을 미부착		